
Hannong Chemicals
윤리강령

제 1 조 (적용범위)

이하 규정은 주식회사 한농화성(이하 '회사'라 한다)을 비롯한 모든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고객, 임직원, 주주, 지역사회, 국가,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과 인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강령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성원이 준수하고 행동의 가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윤리경영 선언 및 윤리규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

1. 윤리경영 담당책임자

윤리경영 담당임원은 회사를 대신하여 사내 비윤리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2. 윤리경영 담당조직

- 1)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 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강령 및 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 2) 임직원이 윤리강령의 기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수시로 실시한다.
- 3) 내부 신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시행한다.

- 4)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신고접수 후 최단기간 내 사실 확인에 노력해야 하며 왜곡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조사를 수행해야한다.

3. 임직원

- 1) 임직원(이하 '구성원'이라고 한다)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한다.
- 2) 구성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제 4 조 (윤리경영 세부 실천시스템)

윤리강령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경영 세부 실천시스템을 정의하고 운영한다.

1. 윤리강령 실행지침

- 1) 윤리강령은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 별도의 사규이다.
- 2) 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① 윤리강령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 ② 윤리강령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 3) 시행일 이후 수정 및 보완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개정하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지한다.
- 4)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강령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2. 윤리실천서약

- 1) 모든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 다짐을 위해 연 1회 윤리 실천서약을 한다.
- 2) 회사는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비윤리 예방 시스템

비윤리 예방시스템은 잠재적 윤리 이슈 도출 및 예방·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1) 윤리교육: 구성원은 윤리의식 고취 및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공통 교육과 직책·직위·직무의 특성과 환경에 기반한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2) 설문: 구성원의 윤리실천 자가진단을 통해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 3) 준수여부 점검: 구성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등을 연 1회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4. 윤리 상담·제보 채널
- 1)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과 관련된 상담과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담당자와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 2)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3) 신고는 신고자 본인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4) 내부신고방법은 다음 방법 중 에서 선택 할 수 있다.
 - ① 주관부서 직접 방문 및 담당자 상담
부서명 : 경영지원부 인사팀
 - ② 이메일
ethics@hannong.co.kr
 - ③ 1:1 게시판
그룹웨어-게시판-윤리경영 제보

제 5 조 (구성원 존중)

1.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 및 육체적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5. 구성원 상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미성년자의 최소 채용 연령과 근로조건(노동시간, 안전, 복지, 휴일, 휴가 등)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 6 조 (차별금지)

1. 승진, 보상, 연수 기회 등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 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3.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인재를 선발, 배치, 평가하고 양성한다.

제 7 조 (희롱 및 폭력금지)

1.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한다.
2. 구성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직장 내 희롱 및 폭력 방지를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연 1회 관련 교육을 실시 해야하며 피해자가 발생 할 경우 내부규정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 8 조 (제보자 보호)

1. 구성원은 윤리강령 및 사규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윤리경영 담당 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2.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상담)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방 및 음해 등의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징계할 수 있다.

3. 윤리경영 담당 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4.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접수된 보호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

1. 관계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2. 고객 및 구성원의 정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인재 육성)

1.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구성원이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3. 구성원이 개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식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구성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5. 전문지식 및 직업관 함양을 위해 각 부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 11 조 (구성원 기본윤리)

1.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

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구성원은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및 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5. 구성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구성원 직무윤리)

1. 회사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2.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적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회사 업무와 행위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 업무의 누수를 방지한다.
4. 구성원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념과 방향성을 충실히 따르며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구성원은 지나친 음주와 흡연 등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상태를 유지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작업장에 근무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6. 구성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자리의 정리, 정돈, 청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7. 구성원은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업이나 겸업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공정한 직무 수행)

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따른다.
2.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 14 조 (회사 자산 보호)

1. 구성원은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며, 횡령 및 허위 증빙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각종 사무용품 내지 소모품을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유가증권의 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 15 조 (기업문화 조성)

1.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구성원 상호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
4. 상사는 부하를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도와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5. 회사와 구성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 간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행위는 지양한다.

제 16 조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1.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정당한 요청 시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2. 가치창출을 통해 경영 성과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
3. 회사의 정관과 사규를 준수하여 주주 및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한다.
4.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은폐하지 않는다.

제 17 조 (자유 경쟁 추구)

1.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2. 구성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 부패 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 (법규 준수)

1.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원자재 공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4. 회사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 및 거래처 임직원, 방문객 등에게는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19 조 (협력회사 응대)

1.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거래참여자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2. 우월적인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3.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며, 계약상 또는 상호간의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4. 협력회사와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이종 취업 등의 이해관계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공존공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 20 조 (기업 시민의 의무 이행)

1.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의 건전하고 보존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한다.
2.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성장을 바탕으로 고용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로 사회와의 공동 발전에 이바지 한다.
4.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5. 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각 활동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한다.

제 21 조 (윤리강령의 준수 의무)

1.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회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도덕 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구성원은 포상하며, 윤리강
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3. 회사의 대표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
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4. 회사에서 정한 비윤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